역대급 장마에 국토 곳곳 잠기고 무너지고

▲ 서울 한강, 전남 곡성, 강원 철원, 경기 가평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역대급으로 긴 장마와 집중 호우에 한반도 곳곳이 무너지고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장마는 이달 14일 현재 사상 최초로 52일을 넘겼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3년의 49일이다.

가장 늦게 끝난 장마 기록인 1987년의 8월 10일도 갱신됐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이달 16일 무렵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집중호우로 인해 3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604가구 8,000여 명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이달 20일까지 이뤄지는 중대본 주관 정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올해 잇단 집중호우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올해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수습·복구를 위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 원, 8~14등급 2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렸다.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주택 모두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300만 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1995년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 만이다.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유자녀 저소득 노인도 생계급여

▲ 복지부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사진=의협신문

저소득 노인이 재산·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2년 뒤에는 없어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2000년 제도 시행 후 20여년 만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한다.

11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을 심의·의결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지금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수급이 가능했다. 2021년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2022년 그 외 가구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을 통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며 "그에 앞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의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